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보도
2026.7.15.(수) 조간
배포
2026.7.14.(화)
담당부서

 외환감독국
외환검사1팀

책임자
팀 장

박운규

(02-3145-7935)

담당자
선 임

박지혜

(02-3145-7937)

'25년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'25년중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
법상 신고·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,072건을 검사하여 979건은
행정제재(과태료, 경고)하고,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.
- 이러한 위반 중에는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
정해진 신고·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,
 -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로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
안내하여 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,
 -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
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속 유도하겠습니다.

외국환거래 신고·보고 흐름도



※ <붙임> '25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1

'25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

- 금융감독원은 '25년중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,072건*을 검사하여 629건(58.7%)을 과태료로, 350건(32.6%)을 경고로 행정제재하고, 93건(8.7%)은 수사기관 통보로 조치하였습니다.

* (연도별 조치건수) '22년 702건 → '23년 786건 → '24년 1,137건 → '25년 1,072건

- (거래당사자) 기업 631건(58.9%), 개인 441건*(41.1%)으로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나, 최근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

* (연도별 개인 조치건수) '22년 317건→ '23년 341건→ '24년 386건→ '25년 441건

- (거래유형) 해외직접투자가 478건(44.6%)으로 가장 많고, 금전대차 161건(15.0%), 부동산거래 97건(9.0%), 증권거래 88건(8.2%) 등 順

- (의무사항*)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7건(53.8%)으로 가장 많고, 변경신고·보고 372건(34.7%), 사후보고 99건(9.2%) 등 順

* 「외국환거래법」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, 변경신고·보고, 지급·수령 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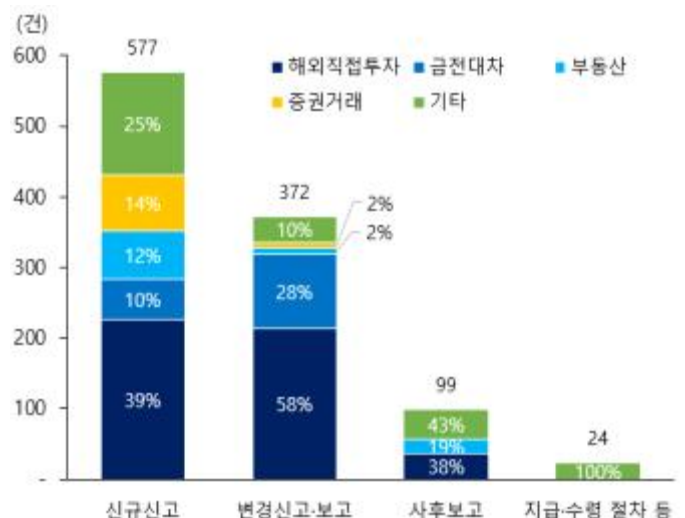
'25년중 외국환거래 유형 및 의무사항별 조치 현황

(단위 : 건, %)

구 분	신규 신고	변경 신고·보고	사후 보고*	지급·수령 절차 등	합 계
해외 직접투자	227	214	37	-	478(44.6)
금전대차	56	105	-	-	161(15.0)
부동산	69	9	19	-	97(9.0)
증권거래	80	8	-	-	88(8.2)
기 타**	145	36	43	24	248(23.1)
합 계	577(53.8)	372(34.7)	99(9.2)	24(2.2)	1,072(100.0)

*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 등 보고서 제출의무

** 해외예금, 보증·담보 제공, 파생상품거래,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·수령 등



가. 해외직접투자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

□ 위규사례

- 거주자 A는 기존에 해외직접투자 중인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(30만달러)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증액투자하였으나,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.
- 거주자 B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소유 지분(10%)을 다른 거주자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였으나,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았습니다.

□ 유의사항

- **(신규신고)** 현행 법규상 1달러만 투자(증액투자 포함)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(또는 3개월 이내 보고)*해야 하며, 출자전환 등으로 투자자금의 실제 이동이 없더라도 신고(보고)해야 합니다.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8조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5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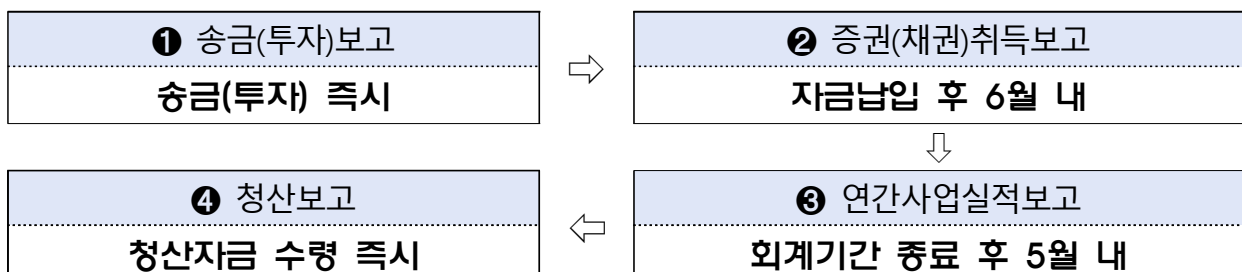
- **(변경보고)** 투자 내용(현지법인명·투자액·소재지 등)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신고(보고)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*를 하여야 하고,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9조①

- **(사후보고)** 신고(보고)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*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9조①

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사후보고 의무



나. 금전대차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

□ 위규사례

- 거주자 C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일본 법인인 비거주자에게 20만달러를 대여한 후 만기일을 연장하였으나,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

□ 유의사항

- **(신규신고)** 현행 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,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사전신고(또는 1개월 이내 보고)*를 하여야 하고,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14조, 제7-15조, 제7-16조

- **(변경신고)** 만기를 연장하는 등 신고내용(금리·대출기간·상환방법 등)을 변경할 경우, 사전에 변경신고*하여야 합니다.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4조

금전대차 유형별 신고·보고기관 현황

구분	통화	신고·보고기관	
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	외화	공공기관, 영리법인 등	→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(5천만불 이하) → 재정경제부 신고(5천만불 초과)
		비영리법인, 개인	→ 한국은행 신고
	원화	10억원 이하 차입	→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
		10억원 초과 차입	→ 재정경제부 신고
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	외화 원화	해외직접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미만	→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
		그 밖의 경우	→ 한국은행 신고

※ <참고> 금전대차의 구체적 내용(대차금액, 차입·대출 여부 등)에 따라 신고(보고)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신고(보고)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

다. 해외부동산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

□ 위규사례

- 거주자 D는 필리핀 소재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한 후, 실제로 단독명의 취득하였으나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
- 거주자 E는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,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
□ 유의사항

- **(신규신고)** 현행 법규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*하여야 하고,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39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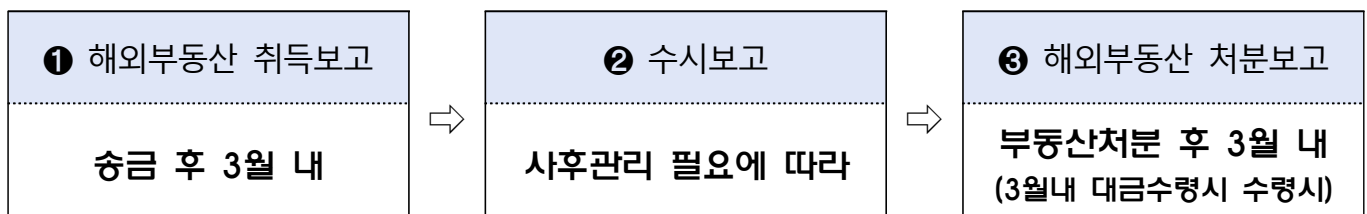
- **(변경신고)** 신고 내용(소재지·취득가액·취득인·국내송금액·현지조달액 등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*를 하여야 하며,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1조

- **(사후보고)**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*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40조

해외부동산 취득·처분 관련 사후보고 의무



라. 증권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

□ 위규사례

- 거주자 F는 미국 법인의 주식 30만주(지분율 3.0%, 30만달러 상당)를 국내 법인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나,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

□ 유의사항

- **(신규신고)** 현행 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전에 사전신고*해야 하고,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31조

- 해외직접투자(지분율 10% 이상 취득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 신고(보고)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**(변경신고)** 신고 내용(증권종류·액면가액·수량·취득가액 등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*를 하여야 합니다.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4조

증권거래 유형별 신고기관

양도인	양수인(신고자)	신고기관
비거주자	거주자	한국은행 신고
거주자	비거주자	외국환은행 신고 : 비상장·비등록 국내원화증권을 「외국인 투자촉진법」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
		한국은행 신고 : 그 외*의 경우 *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

마. 해외예금 주요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

□ 위규사례

- 거주자 G는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국내 회수하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

□ 유의사항

- **(신규신고)**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*해야 하며,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11조

- **(변경신고)** 신고 내용(예치금액·지급상대방 등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*를 하여야 하고,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4조

- **(사후보고)** 신고 이후에도 해외입금보고서 또는 잔액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*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* (관련법규)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7-12조

해외예금 관련 사후보고 의무

① 해외입금보고	⇒	② 잔액현황보고
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(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입금한 경우)		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(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(법인: 50만불) 초과하는 경우)

<참고>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제재내용(자본거래 위반 관련)

- ◇ 수사기관 통보(위반금액 20억원 초과)
- ◇ 과태료
 -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: 위반금액의 2%, 최저 1백만원
 -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: 위반금액의 4%, 최저 2백만원
 - 보고사항 : 건당 2백만원
- ◇ 경고(위반금액 5만달러 이하)